

## 항공정비사 응시자격 인정 이수과목 검토 결과

□ 관련근거
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 “응시자격”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5 “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과목 및 실기시험의 범위”

□ 응시자격 인정 범위

- 학과과목 분야 (국제대학교 항공정비학과)

항공법지정과목	학교 개설과목	이 수 학년/학기	인정 범위	비 고
			항공정비사(비행기)	
항공법규	항공법규	3/1	○	
정비일반	비행기역학	1/1	○	
	항공역학	1/2	○	※주1 인적요인 포함
	항공정비실무	1/1	○	※주1 항공정비일반 포함
	항공안전관리론	2/2	○	※주1 인적요인 포함
항공기체	항공기체	1/2	○	
	항공 공·유압	2/2	○	
	항공기체응용	2/1	○	
항공발동기	항공왕복기관	1/2	○	
	가스터빈기관	2/1	○	
전자·전기·계기	항공전기전자개론	1/1	○	
	항공계기전기장비	2/2	○	

※주1: 2012.12.27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“위협 및 오류관리(Threat and Error Management) 능력에 관한 원리”가 항공정비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에 관련한 지식 등에 포함

○ 정비실습 분야 (국제대학교 항공정비학과)

항공법지정과목	학교 개설과목	이 수 학년/학기	인정 범위	비 고
			항공정비사(비행기)	
정비실습	항공기기초실습	1/1	○	
	항공기기체실습	1/2	○	
	항공기기체응용실습	2/2	○	
	항공기기관실습	2/1	○	항공기왕복엔진실습
	항공기기관응용실습	2/2	○	항공기가스터빈엔진실습
	항공기전자실습	1/2	○	전기전자계기기초실습
	항공기전자응용실습	2/1	○	전기전자계기기응용실습

**행정사항**

- 응시자격 인정 과목 검토 시 제출했던 과목명과 증빙서류 상의 과목명이 불일치 할 경우 응시자격이 기각 처리됩니다.
- 다음과 같은 경우, 학과 항공종사자 응시자격 인정 과목을 재검토하여야 하니,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개설과목 명칭이 변경되어 응시자격 증빙서류(성적증명서)의 명칭이 검토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</li> <li>☞ 기타 교과과정, 강의내용, 실습내용의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</li> <li>☞ 항공법 상의 응시자격 및 학과범위 관련하여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</li> </ul>
---

**☐ 응시자격관련 문의**

-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정비사 담당 연락처 :  
054-459-7411, 02-3151-1511~2